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 건



# 전세권말소등기신청

			년	월	일					등	기관	확	인			각종	통	지
접	수	제			호	처	처 리											
						•	埥	후동	산의	]	표시			•				
등기	]원(	인과 그	그 연	]월일	]			년		월		일						
비o	フ] .	의 목	적															
말	소 ·	할 등	기															
구분		_	호. 명						번호 F번호		죾	<u> </u>	소	(소	. 재	지)		지 분 (개인별)
등기의무자																		
등기권리자																		



등	록	면	허	세	 	_				원	
지	방	亚	육	세	그	_				원	
세	핵		합	계	그	_				원	
					금	_				원	
등	기 신	청	수 수	료	납부번호						
					일괄납부	- :		건		원	
				등기	]의무자의	등기필	될정노	<u>1</u>			
ĵ	부동산	고유병	번호								
성명(명칭)					일런	번호			비밀번호		
				춤	부	서	면				
· 등	기신청~ 기필증		누필확인 로 영수		통 통 통 통	⟨フ] E	<del>}</del> >				
					년	월		일			
	위	신청	인				(1) (1)	(전화 : (전화 :		)	
(또는)위 대리인				ો				(전호	}:	)	
			지병	b법원					귀중		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 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 전세권말소등기신청

	,	년	월 일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수	제	호	처 리 인		

## ① 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1-101

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.03㎡

이 상

2 등	-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5월	25일 해	지	
3 등	- 기 의 목 적	전세권설정등	기말소		
4 E	보소 할 등 기	2015년 5월 전세권설정등:		<b>수 제1001호로 등</b>	·기한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	1 <del>2</del>	소 (소 재 지)	지 분 (개인별)
⑤ 등 기 의 무 자	김 갑 동	801231-123456		시 서초구 서초대 0, 가동 101호(서 !아파트)	
⑥ 등 기 권 리 자	이 대 백	700101-123456	서울특별시 7 로88길 10	시 서초구 서초대 )(서초동)	



금	6,000원						
금	1,200원						
그	7.200원						
금	3,000원						
납부번호 : 12-12-1234	15678-0						
일괄납부: 건	원						
🕽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							
1102-2006-0	002095						
일련번호	비밀번호						
A33D-MO73-35J1	41-1234						
D 첨 부 서 면							
<b>1</b> 통 〈기 타〉							
터 <b>1</b> 통							
확인서 1통							
<u> </u>							
<u> </u>							
2017년 5월 25일							
2017년 3월 23월							
	화 : <b>010-1234-5678</b> )						
김 <b>갑 동</b> ① (전	화 : 010-1234-5678) 화 : 010-5678-1234)						
김 <b>갑 동</b> ① (전							
j	금     금     금     납부번호: 12-12-1234 일괄납부: 건 )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102-2006-( 일련번호 A33D-MO73-35J1 ) 첨 부 서 면 1통 〈기 타〉 1통 확인서 1통 통						

삭2행

## 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\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 등기신청안내서 -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

#### ■ 전세권말소등기란

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.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,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방법

#### ① 공동신청

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#### 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항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간이나 신청인간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,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#### ① 부동산의 표시란

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.

- ②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, 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를 기재합니다.
- 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, 구조, 면적을 기재합니다.



#### 따 대지권의 표시

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,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.

#### ② 둥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"해지", "혼동" 등으로, 연월일은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.

#### ③ 등기의 목적라

"전세권설정등기말소"라고 기재합니다.

#### ④ 말소할 등기란

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,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.

#### ⑤ 둥기의무자란

전세권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#### ⑥ 등기권리자란

소유자(전세권설정자)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#### ⑦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

#### ⑧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#### ⑨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④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

#### ⑩ 둥기의무자의 둥기필정보란

- ②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에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- ①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## ① 첨부서면라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#### ①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④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## < 신청인 >

#### 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#### ② 해지증서

해지 등과 같이 전세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.

#### ③ 등기필증

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. 단,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



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## < 시·구·군청 >

####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## 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#### 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## < 등기과 · 소 >

### 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#### < 기 타 >

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



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(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)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#### 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해지증서, 등기 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